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최기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751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최기상의원안)	2

I. 개요

1. 최기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3751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최기상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0. 28.

(3) 회 부 일 : 2025. 10. 2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수당법」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가 8세 미만인 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은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8세 이상으로 설정하여 중복 지원을 배제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아동수당법」상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의 연령을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므로, 이에 맞추어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13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중복을 배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 연령 인상에 따라 「소득세법」의 자녀세액공제 대상자의 나이를 인상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최기상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자녀세액공제(제59조의2) ○ 대상 - <u>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의 자녀</u> ○ 일반공제 - 자녀 2명 이내 : 1명당 15만원 - 자녀 2명 초과 : 30만원 + 초과 1명당 30만원 ○ 출생·입양공제 - 첫째인 경우 : 30만원 - 둘째인 경우 : 50만원 - 셋째인 경우 : 70만원	☐ 자녀세액공제 대상연령 조정 ○ 대상 - <u>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13세 이상의 자녀</u> ○ 일반공제 : (현행과 같음) ○ 출생·입양공제 : (현행과 같음)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적용례: -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제대상자녀의 나이에 관하여 다음 구분을 따름 (단, 2017년생의 경우 미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기간</th><th>자녀 나이</th></tr> </thead> <tbody> <tr> <td>2026년 1월 1일 ~2026년 12월 31일</td><td>9세</td></tr> <tr> <td>2027년 1월 1일 ~2027년 12월 31일</td><td>10세</td></tr> <tr> <td>2028년 1월 1일 ~2028년 12월 31일</td><td>11세</td></tr> <tr> <td>2029년 1월 1일 ~2029년 12월 31일</td><td>12세</td></tr> </tbody> </table>	과세기간	자녀 나이	2026년 1월 1일 ~2026년 12월 31일	9세	2027년 1월 1일 ~2027년 12월 31일	10세	2028년 1월 1일 ~2028년 12월 31일	11세	2029년 1월 1일 ~2029년 12월 31일	12세
과세기간	자녀 나이										
2026년 1월 1일 ~2026년 12월 31일	9세										
2027년 1월 1일 ~2027년 12월 31일	10세										
2028년 1월 1일 ~2028년 12월 31일	11세										
2029년 1월 1일 ~2029년 12월 31일	12세										

* 최기상의원안 2025. 10. 28. 발의(의안번호 13751)

□ 개정안은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조정하여 자녀세액공제와 아동수당의 중복적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 자녀세액공제제도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우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녀 수에 따른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서 8세 이상에 대하여 자녀가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명인 경우 연 35만원, 3명 이상인 경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이하 “일반공제”)하는 한편,

해당 과세연도에 출산·입양한 자녀에 대하여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을 세액에서 공제(이하 “출산·입양공제”)하는 제도임.

□ 자녀세액공제제도의 연혁을 살펴보면, 일반공제의 경우 2006년 세법개정을 통해 자녀가 2명인 경우 총 50만원, 2명을 초과하는 경우 5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소득공제” 방식으로 처음 도입되었음.

이후 2013년 자녀 관련 소득공제 제도를 정비하면서 자녀가 2명 이내인 경우 1명당 15만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2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되었고,

2015년 세법개정 시 자녀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공제액이 상향되었음.

또한, 2018년 9월 아동수당이 도입되면서 7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아동수당법」에 따른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7세 이상의 자녀는 자녀세액공제를 적용¹⁾하도록 하였고, 이후 2021년 12월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이 8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됨에 따라 자녀세액공제의 대상연령을 8세 이상으로 축소하였음.

이후 2023년 세법개정에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손자녀를 일반공제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하고,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의 세액공제액을 5만원 상향조정하였으며, 2024년에는 자녀 수에 따라 공제금액을 1명 25만원, 2명 55만원, 2명 초과시 55만원에 초과 1명당 4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였음.

한편, 출산·입양공제의 경우 2015년 개정시 도입되었고 2016년 세법 개정 이후부터 자녀 수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해 오고 있음.

1) 아동수당의 지원혜택(자녀 1인당 연 120만원 지급)이 자녀세액공제(자녀 1인당 연 15~30만원 세액공제) 혜택보다 크고, 세액공제의 경우 저소득 면세자에는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를 중복지원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였음.

[자녀세액공제 제도 연혁]

구분	2006년 개정	2013년 개정	2015년 개정	2016년 개정	2018년 개정	2022년 개정	2023년 개정	2024년 개정
일반 공제	*소득공제 방식		*세액공제 방식					
	- 2명 이내 : 총 50만원	- 2명 이내 : 1명당 15만원			(좌동) *자녀연령 7세 이상 으로 한정	(좌동) *자녀연령 8세 이상 으로 한정	-1명: 15만원 -2명: 35만원 -2명 초과: 35만원+초과 1명당 30만원 *기본공제대상자인 손자녀 포함	-1명: 25만원 -2명: 55만원 -2명 초과: 55만원+초과 1명당 40만원
	- 2명 초과 : 1명당 100만원	- 2명 초과 : 1명당 20만원	- 2명 초과 : 1명당 30만원					
출산 입양 공제	-		1명당 30만원	-첫째 : 30만원 -둘째 : 50만원 -셋째 : 70만원				

□ 개정안은 정부가 「아동수당법」상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의 연령을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는 점을 전제한 후, 이에 맞추어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13세 이상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아동수당의 중복지원을 배제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2025.8.22. 정부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면서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대상을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는 내용을 발표했고²⁾, 보건복지부 또한 2025. 10.1. 보도자료에서 고령화와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 8세 미만에서 매년 1세씩 확대하여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공식화함.³⁾

2) “새 정부 경제 청사진 발표…AI·초혁신경제로 ‘잠재성장률 3%’ 달성”,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2025.8.22.

3) “새 정부 국정과제 설명 및 지역 의견 수렴을 위한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 개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10.1.

[개정안에 따른 아동수당 대상연령 단계적 상향]

	‘25		‘26	‘27	‘28	‘29	‘30 이후
아동수당	8세 미만	⇒	9세 미만	10세 미만	11세 미만	12세 미만	13세 미만

자녀세액공제	8세 이상		9세 이상 (+1)	10세 이상 (+1)	11세 이상 (+1)	12세 이상 (+1)	13세 이상
--------	-------	--	------------	-------------	-------------	-------------	--------

□ 아동수당의 지원혜택(자녀 1인당 연 120만원 지급)이 자녀세액공제혜택보다 큰 점, 세액공제의 경우 저소득 면세자에는 지원되지 않으며 충분한 납부세액이 있는 중상위 가구의 체감이 높아 역진적인 성격이 있는 점,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이 도입되면서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아동수당 대상연령의 변경에 따라 자녀세액공제 대상을 조정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과 달리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현금급여와 세제지원 효과가 함께 적용됨으로써 아동양육 가정의 가처분소득이 확대됨에 따라 양육비 부담 경감 효과가 제고되는 점, 동일 목적의 현금·세제수단을 동시 허용할 경우, 정부의 출산·육아정책에 대한 신뢰도 및 체감도가 상향될 수 있는 점 등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또한,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현재 「아동수당법」의 개정이 전제되어야 하나, 현재 정부가 발표한 아동수당

제도개선 내용에 따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매년 1세씩 아동 수당 연령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현재 발의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동수당법」의 개정 경과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임.

문 의 처
02)6788-5149